



의안번호	제140호
------	-------

<h1>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1>

제 출 자	행정복지국장
제출연월일	2022. 10. 6.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40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의 책무 신설.(안 제2조)
- 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
- 다.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 3) 규제심사 : 비대상
-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8. ~ 2022. 9. 28. (20일간)

나) 결과: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논산시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를 “시”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청구인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논산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논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위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 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자 치 행 정 과 장	조 진 원
	행 정 팀 장	변 애 숙
	담 당 자	김 범 수 (746-5213)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 산 시 장 (인)</p>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논산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논 산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논산시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논산시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책무) <u>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2. <u>시장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3. <u>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2조(논산시의 책무) ① <u>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법 제5조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u></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u> -----</p>

현행	개정안
<p>작성기준일 현재 <u>논산시(이하 “시”라 한다)</u>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자</u>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u>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u> <u>2.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u> <u>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항</u> <u>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u> 	<p>----- <u>시에</u> -----</p> <p>-----</p> <p>-----</p> <p>----- <u>외국인은</u> -----</p> <p>--.</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있게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p><u>물을 말한다</u>) -----</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논산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1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p>	<p>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p>

현행	개정안
<p><u>촉 또는 임명한다.</u></p> <p><u>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u></p> <p><u>2.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u></p> <p><u>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u>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u>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담당과장으로 한다.</u></p> <p><u>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u>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u>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u>③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u></p> <p><u>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u>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③ <u>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u></p> <p>④ <u>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 <u>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u></p> <p>② <u>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5조(심의회 간사) ① <u>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u></p> <p>② <u>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u></p>
<p>제16조(회의운영) ① <u>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u></p> <p>② <u>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u></p>	<p>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④ <u>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u></p> <p>⑤ <u>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u></p> <p><u>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이 경우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u>제18조(처리기간) ①·② (생략)</u></p> <p>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p>	<p><u><삭 제></u></p> <p>제18조(처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및 논산시 주민투표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논산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류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논산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논 산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류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 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논산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청구사유 :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000읍·면·동(0책중 0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어 넣습니다.
- ()에는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자의 직명과 성명을 적어 넣습니다.
-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수입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적어 넣습니다.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 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논산시 주민투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 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채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논산시 및 읍·면·동(0책중 0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논산시 및 읍·면·동(0책중 0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

현 행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참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어 넣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어 넣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줄을 그어 지우고, 참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어 넣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div> 는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개 정 안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류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류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div> 는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류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현행	개정안																																																														
<p>[별지 제7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 의 신 청 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15%;">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td> </tr> <tr> <td>대 상</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사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논 산 시 장 귀하</p> </td> </tr> <tr> <td colspan="4">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td> </tr> </tbody> </table>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논 산 시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별지 제7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 의 신 청 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15%;">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 :)</td> </tr> <tr> <td>대 상</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신청사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논 산 시 장 귀하</p> </td> </tr> <tr> <td colspan="4">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류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td> </tr> </tbody> </table>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논 산 시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류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논 산 시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논 산 시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설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류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조진원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